제출서류1.

# 2022 서울홍사단 임원선거 후보등록서

| | | | |
|---|---|---|---|
| **성 명** | | | **사 진** |
| **생년월일** | | | |
| **단우번호 (서약일)** | | | |
| **후보구분** | □지부장 □평의원 □감사 | |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 **E-mail** | | | |
| **일반경력** (현직 포함하여 3개 이내) | | | |
| **홍사단 경력** (현재 단 직책 포함하여 3개 이내 기재) | | | |
| **주요공약** (3가지 이상 기재) | | | |
| **2022년 월 일**<br>**후보 : _____(서명)** | | | |

---------- 아래는 사무처 작성 ----------

| | |
|---|---|
| **의무이행 사항** | **의 무 금 : ( )원씩 ( )회 납부**<br>**월례회 및 행사 : ( )이상 출석** |

제출서류2

# 지부장 후보 추천서

후보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단우번호 :

위 단우를 지부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서명)

추천인:　　(서명)

추천인:　　(서명)

※ 추천인은 통상단우로 한정합니다.

2022.　10.　.

제출서류3

# 서 약 서

본인은 _____후보로서 선거규정을 준수하며 피선거권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즉각 후보자 사퇴 및 당선 무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후보자 성명: (인)

# 2022 서울흥사단 임원 선거운동 관련 안내

2022 흥사단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지부 입후보한 임원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선거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단우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방법을 정하면서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는 방법을 몇 가지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선거운동이 진행되다 보면 일부 선거권자는 선거운동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는 가능하면 자신이 흥사단에서 무슨 활동을 해왔고 어떤 목표와 가치를 갖고 입후보하였는지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선거권을 가진 단우들께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의 심정을 헤아려 격려하는 한편, 선거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흥사단의 발전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하면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 선거운동 기간 :** 2022년 11월 07일(월)부터 11월 18일(금) 13:00까지로 한다.

**○ 선거운동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행위**

1. 전화로 후보자를 알리는 행위. 단 2회를 초과하여 통화해서는 안된다.
2. 문자메시지는 선거기간 중에 최대 2회에 한하여 보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자기소개나 공약 등으로 한정한다.
3. 이메일은 선거기간 중 최대 2회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자기소개나 공약 등으로 한정한다.
4. 카카오톡 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개인 대화방(1:1 대화) 개설만 허용한다. 즉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 서울흥사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6. 서울기러기 쾌재정 단체카톡방에 선거운동을 후보자는 2회 할 수 있다.

**○ 단우, 선거권자, 후보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

1. 다수의 단우가 모여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연설 등을 통해 후보자를 알리는 행위, 음식 접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후보자 외의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를 메일 및 문자 선거운동 하는 행위(구두 홍보는 가능)

3.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 등으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약법 및 선거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5. 위의 후보자가 할 수 있는 6가지 선거운동을 위배한 행위

**○ 선거운동 규정을 위배한 후보자 또는 단우에 대한 제재**

1. 후보자 이외의 단우가 허가되지 않은 선거운동을 하여 발견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동시에 홈페이지 단우 게시판에 게시한다.
2. 후보자가 선거운동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위배할 경우, 1차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인에게 경고하고, 2차에는 본인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3차 이상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모든 선거권자에게 문자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 선거권자 명단 교부**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정보공개를 동의한 선거권자의 명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별도 양식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정보공개를 동의한 선거권자 명부 요청을 받은 선관위(사무처)는 선거권자의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전달한다. 단 온라인을 통한 전달은 허용하지 않는다.

2022. 10. 7

서울흥사단 선거관리위원장